

대전지방법원 2018. 9. 14 선고 2018가단206469 판결 [사해행위취소.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대전신용보증재단

피고1. A

2. B

변론 종결2018. 8. 31.

판결 선고2018. 9. 14.

주 문

1. 피고 A는 원고에게 20,403,636원 및 그 중 20,326,956원에 대하여 2018. 1. 10.부터 2018. 6. 13.까지는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가.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5. 30. 체결한 매매계약을 21,967,41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나. 피고 B는 원고에게 21,967,4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A에 대한 청구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B에 대한 청구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이은신

별지